

고성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 번 호	490
-------------	-----

제출연월일 : 1998. 7. 15.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할때에 감면받는 임대용 공동주택 규모를 확대코자 함.

2. 주요골자

-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재산세를 감면받는 임대용 공동주택 규모를 당초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함(안 제12조제2호)

3. 참고사항

- 도세정13400 - 316('98.05.29)호 「지방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 통보」

4. 본문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60제곱미터이하인"을 "85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 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생략)	1.(현행과 같음)
2. 전용면적 <u>60제곱미터이하인</u>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u>85제곱미터이하인</u>
3.(생략)	3.(현행과 같음)